

서면 경남아너스빌 엔테로까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- 2018.05.04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'주택전시관 방문 신청'에서 '인터넷 청약 신청'으로 변경되었으며,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,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만65세이상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(은행창구 접수 불가) 허용됩니다.
- 2018.10.01. 국토교통부 입주자저축에 관한 전산관리업무 지정기관 변경 고시에 따라 2020.02.01.부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에서 본인이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하셔야 하며, 미접수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.
-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,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(초)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, 방문신청 및 등·호수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,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.
 1. 수도권·투기과열지구·청약과열지역 : 1년
 2. 수도권 외의 지역 : 6개월
 3.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: 3개월
-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으며, 해당기관에서는 특히 '신청자격' 및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를 충분히 안내,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[2022.09.16.]에 “서면 경남아너스빌 엔테로까사” 대표번호(051-759-891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급개요 및 일정

- 공급위치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80-53번지 일원
- 공급규모 : 지하 5층, 지상 23층, 총 146세대 중 80세대
- 일정 계획(예정)

구분	일자	참고사항
입주자모집공고	2022.09.16.(금)	청약홈
견본주택개관	2022.09.16.(금)	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331-6번지
특별공급 접수일자	2022.09.26.(월)	인터넷접수 원칙 / 08:00~17:30까지
당첨자(등호수)발표	2022.10.06.(목)	http://www.applyhome.co.kr (일반공급 신청자와 동일하게 한국부동산원 전산추첨 후 게시)
계약체결	2022.10.17.(월)~2022.10.19.(수)	견본주택

- ※ 상기일정은 예정 일정이며, 관련 업무의 진행 사정상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 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(네이버인증서 포함)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- ※ 특별공급의 경우 노약자,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(은행창구 접수 불가) 허용됩니다. (방문 접수시간 : 10:00 ~ 14:00) 단,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'특별공급 구비서류'를 모두 완비 후 접수.

2.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자격

- ※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해당하는 자
- ※ 입주자 모집공고일[2022.09.16.(금)]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'무주택구성원'
 으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36조 등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.
- ※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.
 ∴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, 이전기관종사자,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
-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
- ② 청약예금 :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
- ③ 청약부금 :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㎡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

<청약 예치금 기준액>

구분	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	그 밖의 광역시	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
전용면적 85㎡이하	300 만원	250 만원	200 만원

- 무주택세대구성원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[2022.09.16.(금)] 현재 무주택이어야 함

※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?

- 다음 각 목의 사람(세대원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)
- 가. 주택공급신청자
 -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 - 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 되어있는 사람
 - 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 - 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
•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방법
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.
-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홈(www.applyhome.com)에서 특별공급 신청하여야 함 [신청시 주택형 변경 불가,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·호배정) 및 계약 불가]
- 당첨자 발표는 일반공급 발표일에 동시 발표
-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, 다자녀특별공급, 신혼부부특별공급, 노부모부양특별공급,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, 동·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·호수를 결정합니다.
-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,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.
-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, 특별공급당첨자로 선정 시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,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
- 기관추천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타 특별공급(다자녀,신혼부부,노부모부양,생애최초)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, 중복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,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,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,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'수도권 및 투기·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외 6개월, 위축지역 3개월'(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 동안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)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
- 예비입주자 선정
- 사업주체가 기관추천, 다자녀특별공급, 신혼부부특별공급, 노부모부양특별공급,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-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%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-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,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,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

4. 특별공급 신청 유의사항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 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및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,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- 2018.05.04. 개정된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19조,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(한국부동산원 청약Home)을 원칙으로 하며, 정보취약계층(고령자 및 장애인 등)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.
- 인터넷 청약(한국부동산원 청약Home)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,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
-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(규칙 제47조)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(자료)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,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,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.
-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·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(1회 특별공급 간주),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
-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, 울산광역시 거주(주민등록표등본 기준)하는 만 19세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[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(재외국민, 외국국적 동포) 및 외국인 포함]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. 단,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합니다.